

2022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

1. 협의회 개요

- (목적)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기관발전에 기여
- (운영) 협의회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직책수행
 - * 「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운영

2. 협의회 구성 및 운영

- (구성) 노사 동수로 하며,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
 - 사용자 : 원장 및 원장이 위촉하는 자
 - 근로자 : 노조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
- * 위원임기 : 3년, 의장 :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선정(필요시 노사 각 1인 공동의장 가능, 1년)
- (운영) 분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, 필요시 임시회의 수시개최
 - * 노사 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, 출석위원의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

3. 협의회 역할

협의 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. 근로자의 채용·배치 및 교육훈련 3. 근로자의 고충처리 4. 안전, 보건,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. 인사·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.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·재훈련·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 원칙 7.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. 임금의 지불방법·체계·구조 등의 제도 개선 9. 신기계·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.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1.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.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. 근로자의 복지증진 14.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.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.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
의결 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.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.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.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.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	
보고 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.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.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. 기관의 경제적·재정적 상황 	